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10

발의연월일: 2023. 3. 14.

발 의 자:윤건영·권인숙·김남국

김두관 · 김상희 · 김의겸

안규백 · 최강욱 · 최종윤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프랑스 테러·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음.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제5항 전단 중 "사람"을 "사람 및 그 유가족"으로, "활동"을 "활동 및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모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 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